

文獻으로 본 韓國住宅史

—先史時代부터 高麗時代까지—

金 正 基*

序 言

韓國住宅에 관한 資料로는 先史時代의 堅穴住居址를 비롯한 廢墟된 집터와 高句麗壁畵古墳에 그려진 住宅關係 그림, 그리고 朝鮮王朝代에 建立된 住宅 등의 物質的 資料와 中國이나 우리나라에 傳해 온 古文獻에 나타난 記錄이 있다.

여기서는 이들 資料 가운데 先史時代부터 高句麗까지의 物質的 資料를 概觀하고 아울러 先史時代부터 高麗時代에 이르는 住居에 關聯된 文獻資料를 檢討 考察하여 우리 나라 先史時代부터 中世에 걸친 時期의 住居 樣相을 살피도록 하겠다.

이 글의 第1項은 先史時代의 住居址와 高句麗壁畵古墳에 나타난 住宅에 관한 그림에 대한 概要이며, 第2項에서 第4項까지는 筆者가 1971년에 日本 東京大學에 提出했던 學位請求論文인 「韓國住宅史研究」속의 文獻考察에 관한 부분을 발췌 補完한 것이다. 또 이글은 〈韓國文化史大系〉第一輯「韓國住居史」의 內容과 一部 重複되는 것이다.

I

先史時代를 舊石器時代와 新石器時代, 青銅器時代 및 初期鐵器時代로 區分하나 여기서는 新石器時代를 櫛文土器文化期, 青銅器・初期鐵器時代를 無文土器文化期로 區分하여 考察하도록 하겠다.

舊石器時代는 사람에 의하여 처음으로 加工하거나 使用한 것이 分명한 打製石器를 道具로 使用하여 狩獵 漁撈을 生活手段으로 했던 時代로서 우리 나라에서 그 時代의 確實한 遺蹟이 發見된 것은 解放 후의 일이었다. 즉 公州 石壯里遺蹟과 雄基 屈浦里遺蹟이 그것이며 이 以外에도 濟州島를 비롯하여 몇 곳에서 遺蹟이 알려져 있다.

舊石器時代의 住居에 대해서는 自然洞窟이나 바위그늘(岩陰)住居 등과 간단한 人工的인 바위그늘들이 있다고 하나,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뚜렷한 住居遺蹟은 確認되지 못했다. 다만 石壯里

* 文化財研究所長(工博), 建築史

遺蹟이나 屈浦里遺蹟에서 각각 住居와 關聯된 遺構가 發見되었다는 報告가 있으나 資料未備로 住居址로서 言及할 수 있을 段階는 못 되는 것 같다.

櫛文土器文化期에서도 사람들은 주로 狩獵과 漁撈에 의해 생활하였다. 그러나 그 末期에는 얼마간의 農耕이 행하여졌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당시의 사람들은 대체로 河川의 下流沿岸이나 海岸 가까이 居住하였다. 이 時期의 調査된 住居址로서는 義州 美松里와 春川 校洞의 洞窟住居 이외에는 모두가 땅을 파서 움을 만들어 세운 堅穴住居의 遺址였다. 堅穴住居址 가운데 가장 일찍 發見된 것은 雄基 松坪洞貝塚 밑에서 發見된 住居址이며 그 밖의 것은 모두 解放後에 調査 發見된 것이다. 發見된 住居址의 대부분은 北韓에서 였으나, 最近에 서울 岩寺洞遺蹟에서 매우 遺存狀態가 좋은 住居址가 發見되었고 釜山東三洞貝塚에서도 住居址의 痕跡이 發見되었다.⁽¹⁾ 北韓에서는 鳳山郡 智塔里, 溫泉郡 雲下里 弓山, 雄基郡 屈浦里 西浦項, 中江郡 土城里, 寧邊郡 細竹里 등 遺蹟에서 發見되고 있다. 이 時期의 住居址는 주로 丘陵의 傾斜面에 자리잡았고, 작은 聚落을 形成하고 있었다. 堅穴의 平面形態는 圓形 또는 圓形에 가까운 方形의 것이 많았고 典型的인 方形의 것은 智塔里 第1號住居址 뿐이며 長方形의 것은 土城里와 細竹里遺蹟에서 發見되었다. 住居址 內部에는 中心에 돌을 둘러거나 진흙을 독 같이 쌓아 돌린 화덕(爐)이 있고, 어떤 것에는 화덕 옆과 다른 곳에 큰 항아리 밑을 잘라내고 꺼꾸로 바닥에 묻은 貯藏孔이 있는 것이 있고 또 출입을 위한 계단이나 傾斜路가 있는 것이 있었다.⁽²⁾

無文土器文化期는 農耕이 상당히 많이 행하여졌던 時期다. 이 時期 住居址는 상당히 많이 發見되어 있다. 南韓에서는 漢江流域과 그 周邊에서 發見되어 있고, 特異한 堅穴住居址가 瑞山郡 海美遺蹟과 扶餘郡 松菊里遺蹟에서 發見되었다. 北韓에서는 鴨綠江 및 豆滿江, 大同江 등의 河岸附近에서 많이 發見되었다. 이들 가운데 重要な 것은 北韓의 茂山郡 虎谷洞, 會寧郡 五洞, 江界市 公貴里, 寧邊郡 細竹里, 松林市 石灘里 등의 遺蹟이며 南韓에서는 坡州郡 玉石里 및 交河里, 驪州郡 欣岩里⁽³⁾ 서울 驛三洞⁽⁴⁾ 등에서 發見되었다.

이들 住居址는 거의가 河川沿岸 가까운 丘陵 臺地에 자리잡았고 堅穴의 規模는 一般的으로 前時期 것 보다 크다. 堅穴의 平面形態는 대부분이 長方形으로 드물게 方形의 것도 있었다. 規模는 面積이 20m²의 것이 가장 많고 큰 것은 80m²나 되는 것이 있고 작은 것은 10m² 정도였다. 화덕은 堅穴 中央에 있는 것은 거의 없고 꼭 한 쪽으로 치우치고 간혹 화덕이 두 곳에 있는 것도 있었다. 內部에 貯藏孔이 있는 것은 전혀 없고 출입을 위한 施設 즉 階段이나 傾斜路 등도

(1) 釜山 東三洞遺蹟은 1968년부터 1970년까지 3회에 걸쳐, 서울 岩寺洞遺蹟은 1971년부터 1975년까지 4회에 걸쳐서, 國立中央博物館에 의해 調査되었고 그 중 一部 內容은 「博物館뉴스」 11號와 18號 및 40號에 紹介되었다.

(2) 拙稿 「韓國堅穴住居址」 (一) 考古學 1輯.

(3) 「欣岩里住居址——漢江畔先史聚落址發掘報告」 서울大學校 考古人類學叢刊 第4冊 1972年, 1973年度, 1974年度 및 1975年度.

(4) 金良善·林炳泰 「驛三洞住居址發掘報告」 史學研究 20輯 韓國史學園 1968年.

없는 것이 많았다. 앞에서 말 한 特異한 堅穴住居址가 發見된 海美와 松菊里遺蹟의 것은 住居에 必需的인 것으로 생각되는 화덕이 전혀 없는 住居址였다. ⁽⁵⁾

高句麗壁畫古墳에 그려진 住宅關係 그림은 雙楹塚, 天王地神塚, 大安里 1號墳, 安岳 1號墳 通溝 12號墳 등에서 住宅의 主屋인 殿閣圖가 있으나 雙楹塚와 安岳 1號墳 以外的 그림은 퇴락 및 이 심하여 건물 모습 잘 볼 수 없었다. 住宅의 附屬建物들은 安岳 3號墳이 가장 많은 種類를 그렸고, 그 밖에 藥水里壁畫墳, 舞踊塚, 角抵塚, 通溝 12號墳, 麻線溝 第1號墳 등에 부엌을 비롯하여 마구간, 창고 등의 그림이 있다.

이들 그림에 의하면 당시의 住宅主屋은 기와집으로 기둥 위에는 斗拱을 올리고 용마루 끝에는 鸞尾를 비슷한 裝飾瓦를 使用했으며 집 周圍에는 四方에 大門을 갖는 垣牆을 돌렸던 것을 알 수 있다. 부엌, 倉庫, 肉庫, 車庫, 방아간 등이 모두 별채로 세워지고 마구간에는 많은 말과 소들이 들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그림은 大形古墳을 築造할 수 있었던 사람들 즉 支配階級이나 貴族들의 住宅의 片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⁶⁾

II

우리 나라 先史時代 住居에 관한 記錄은 中國의 古文獻 가운데 얼마간 찾아 볼 수 있다. 우리 나라 中世 또는 近世의 文獻 속에도 多少 이 時代의 住居에 관한 記錄을 찾아 볼 수 있으나 이들 記錄은 모두 中國의 古文獻에 있는 記錄을 그 대로 轉記하거나 혹은 약간의 註釋을 달아서 轉記한 것에 지나지 않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 文字가 들어온 것이 三國時代 以後의 일이며 現存하는 金石文 以外的 文獻은 高麗 以後에 記錄된 것이기 때문에 先史時代의 事實을 우리 나라 古文獻에서 찾는다는 것은 별 所得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後世의 記錄에는 言及치 않고 中國의 古文獻의 記錄을 考察하고 可能的 것은 遺蹟上으로 알게 된 知識과 아울러 당시의 住居의 實態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中國의 古文獻 가운데 우리 나라 先史時代에 속하는 住居에 관한 記錄은 〈後漢書〉 〈三國志〉 및 〈晉書〉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文獻에 記錄된 內容은 우리 나라 先史時代 最末期 즉 初期鐵器時代에 속하는 時期로서 아직 維一國家로서의 體制가 確立되기 以前의 原始的인 小部族의 集團에 의해 形成되고 있던 時期의 事實이다. 이 時期의 實年代는 紀元前後에서 2~3世紀에 걸친 사이의 일로 생각되며 이 時期를 學者에 따라서는 原史時代라고도 한다.

여기서 舉論되는 여러 種族은 당시 韓半島를 비롯하여 그 北方에 割居했던 種族으로 지금의 우리 韓民族을 形成한 根元的인 種族이었다고 믿어지는 種族들이다.

[挹婁]

(5) 拙稿「韓國堅穴住居址考」(二) 考古學 第3輯.

扶餘 松菊里遺蹟은 1975년부터 1976년에 걸쳐 2次의 調査가 實施되었고 그 略報는 〈博物館뉴스〉 54號에 收錄됨.

(6) 拙稿「高句麗壁畫古墳에서 본 木造建築」金載元博士回甲記念論叢 乙酉文化社 1969年.

挹婁는 古朝鮮時代に 滿洲地方에 割居하고 있었던 部族으로서 <後漢書>나 <晉書> 등에 의하면 그 本據地가 長白山 北쪽에서 沿海州에 이르고 南쪽은 豆滿江에 達했다고 傳해진다.

<後漢書> 東夷傳 挹婁條에 의하면,

「……無君長 其邑落各有大人 處於山林之間 土氣極寒 常爲穴居以深爲貴 大家接九梯 好養豕養其肉 衣其皮……作厠於中園之而居……」

라고 있고, <三國志>에도 거의 같은 記錄을 볼 수 있다. 이에 의하면 當時 挹婁族에게는 君主의 制度가 아직 確立되지 않은 小部族國家의 形態를 갖고 있던 것을 알 수 있고 小部族에 大人이 있어 그들의 治서를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住民들은 山林之間에 살고 있고 土地는 極寒의 地였다고 한다. 사람들의 住居가 「穴居」로서 「以深爲貴」라고 하였고 「大家接九梯」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穴居」가 洞窟住居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堅穴住居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以深爲貴」란 事實은 이 時期가 비록 初期鐵器時代に 접어들었던 時期였다 해도 鐵器가 充分히 普及되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原始時代의 領域에 속하는 時代임으로 相當한 艱이를 갖는 堅穴을 깊게 파내려가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고, 堅穴의 깊이가 깊을 수록 그에 必要한 勞力도 여간 많이 드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많은 勞力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집이 財力으로 보아 富裕하거나 또는 權力的으로 他人을 充分히 動員 使役할 수 있는 立場에 있는 사람의 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以深爲貴」란 말은 充分히 理解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大家接九梯」란 말은 쉽게 納得되지 않는 말이다. 원래 中國人들은 事物에 대한 表現을 誇大하여 表現하는 일이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事實이며 「九梯」의 「九」는 그 대로 數字의 9로 理解할 必要는 없고 “많은”이란 程度로 解釋하여 無妨할 것이다. 그러나 堅穴의 깊이가 “많은 사다리를 接한다”할 程度로 깊은 것이 있었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까지 調査된 遺蹟으로 보아도 納得될 수 있는 깊이가 못된다. 때문에 筆者는 「梯」를 “사다리”라고 하는 一般的인 解釋을 버리고 “9段의 사다리” 또는 “많은 段의 사다리”라고 理解하려 한다. 그것이 合理的이며 「梯」를 “사다리꼴” 또는 “梯臺”등으로 보면 그러한 解釋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理解한다면 지금까지에 發見된 가장 깊이가 깊은 堅穴住居址인 虎谷洞 第20號住居址가 깊이 1.4m 나 되었고 이 堅穴에 出入하려면 적어도 7~8段의 階段 또는 사다리가 必要했을 것이며 위의 記錄과도 一致되는 것이다.

또 「作厠於中園之而居」라고 있어 이것은 <三國志> 東夷傳 挹婁條에 있는 「作溷在中央 人圍其表居」란 記錄과 그 表現에 多少 差異가 있어나 그 內容은 전혀 같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厠」이나 「溷」은 모두 “똥간” 즉 “便所”란 뜻이 있고 「溷」에는 그 밖에 “우리(畜舍)”란 뜻도 포함되어 있다. 中國 漢代의 明器 속에 上部가 便所로 되고 그 밑이 돼지우리로 된 象形土器를 볼 수 있고, 지금도 濟州島에는 그러한 便所를 볼 수 있는데, 여기 「厠」이나 「溷」은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知識을 갖고 위의 글을 解釋한다면 대략 다음과 같이 理解할 수 있겠다. 〈後漢書〉의 記錄은 “뒗간을 居處로 둘러쌓인 中央에 만든다”라고 할 수 있고, 〈三國志〉에서는 “便所를 만드는데 中央에 만들고 사람은 그 밖을 둘러쌓아 居處한다.”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아마도 몇몇 住居가 聚落을 形成하여 그 部落 中央에 돼지우리를 兼한 便所를 두고 共同으로 使用했던 것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이 時期에 便所를 共同으로 施設하고 使用했다는 것은 小部落이 한 共同體로서 生活을 營爲했던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며 注意할 만한 事實이다. 從來 一部 日人學者는 이 記錄을 갖고 한 住居 內部에 便所를 만들어 그 周邊에서 사람들이 生活했다고 解釋한 일이 있으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遺蹟上으로도 그러한 遺構가 確認된 바 없다.

[肅慎]

肅慎은 滿洲 東部地方에 割居해 있던 部族으로 狩獵生活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前述한 挹婁가 이 部族의 後裔라고 생각되고 있다.

肅慎에 대해서는 〈晉書〉 四夷傳 肅慎條에,

「肅慎氏一名挹婁……居深山窮谷 其路險阻 車馬不通 夏則巢居 冬則穴處……」

라고 있다. 이 記錄은 肅慎族이 山이 험하고 골짜기 깊은 곳에 居處한 것을 말하며 또 그들이 夏季와 冬季에 따라 住居를 바꾸어 生活했던 것을 나타내고 있다. 中國의 古文獻 가운데 우리 나라 住居에 관한 記錄에서 季節에 따라 住居를 바꾸어 生活했다는 事實을 남긴 것은 이 記錄과 後說하는 〈新唐書〉의 僞羅國 즉 濟州島의 住居에 대한 記錄 뿐이다. 肅慎族이 割居했던 地方이 大陸性氣候로 寒暑의 差가甚한 곳이며 冬季의 寒氣가 極甚한 地域이었기 때문에 夏季의 避暑의인 住居와 冬季의 防寒의인 住居로 交替하면서 生活했다는 것은 있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지금도 地方에 따라서는 여름 더운 季節에는 老人들이 部落 가까이 있는 큰 바위 위에서나 亭子에서 밤을 지내는 곳이 적지 않은 것을 보아도 理解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夏則巢居」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던가 당장 理解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冬則穴處」는 그것이 堅穴住居든 또는 洞窟住居를 말하는 것이든 간에 큰 問題는 없다. 그러나 이것은 遺蹟에 대한 調查結果나 前述한 挹婁의 住居에서 본 바에 의해 堅穴住居로 보는 것이 옳겠다.

「夏則巢居」의 「巢居」가 어떤 形態의 住居였을까. 여름에 快適하게 居處할 수 있는 시원한 住居였음은 文意로 보아 分명한 것이나 그 實態는 뚜렷이 알 수 없다. 辭典⁽⁷⁾에 의하면 “나무 위에 住居를 만들어 산다. 禽獸의 害를 避하기 위하여 樹上에 住居를 構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고 그 出典을 搜神記⁽⁸⁾의 「巢居知風」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疑心할 수 없는 樹上住居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筆者의 생각으로서는 우리 韓半島에 그것도 三國時代 보다 더 앞

(7) 鹽谷 溫「新字鑑」日本 弘道館刊 1941年

(8) 晋나라 干寶 撰

서는 時代에 樹上住居가 있었다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좀 飛躍한 생각인 感이 있기는 하나 같은 辭典에 있는 「巢車」라는 말에 대한 說明인 “望樓가 달린 수레”로서 兵車의 一種이란 말에 着眼하여 “望樓 같은 住居”라고 解釋하는 것이 妥當하지 않겠는가 생각했던 것이다. “望樓 같은 住居”라면 住居 바닥이 땅 위에 높이 자리 잡아 地熱이 적고 通風이 좋은 高床住居를 말 하는 것이다. 筆者는 三國時代의 新羅土器 가운데 高床建物을 模形한 土器를 본 바 있다.⁽⁹⁾ 高床住居는 元來 南方 熱帶地方이나 高温多濕한 地域의 住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住居形式으로서 肅慎族의 割居地와는 地域적으로 맞지 않으나 夏季의 住居란 制限이 있고, 또 高句麗 壁畫古墳에서 볼 수 있는 高床倉庫나 樓閣⁽¹⁰⁾ 등으로 보아도 이 時期에 이러한 高床住居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 高床住居는 樓閣이나 그런 種類의 本格的인 建物이 아니고 쉽게 架構할 수 있고 또 撤去할 수 있는 지금 農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두막” 같은 建物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季節에 따라서 住居를 바꾼다는 事實과 關聯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無文土器文化期의 住居址 가운데 公貴里遺蹟의 住居址群이다. 이 住居址群은 6個의 堅穴住居址가 一群을 이루어 있으며 이들 住居址 사이는 넓고 긴 흙으로 서로 連結되어 있었다. 이 遺蹟의 調査者는 이 흙을 住居間을 往來하기 위한 交通壕라고 主張하고 있다. 이것이 萬一 이 住居址가 아직 사람이 生活하는 住居였을 때 그 交通壕가 存在했다면, 봄부터 여름에 걸친 降雨期에는 빗물이 交通壕를 통해 住居內에 浸入하여 도저히 住居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것이다. 調査者의 交通壕란 主張을 그 대로 믿는다면, 이 住居는 降雨가 거의 없는 冬季에만 使用할 수 있는 住居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면 그들은 夏季에는 간단한 高床住居에서 起居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扶餘國〕

扶餘國이란 紀元前 1世紀頃부터 약 300年間 통구스系인 扶餘族이 세운 部族國家로서 中國東北部地方에 割居했던 大部族이었다. 이들은 部族聯合에 의한 聯合國家로서의 體制를 갖추었던 國家인듯 하다. 그러므로 〈後漢書〉東夷傳 가운데 唯一하게 國名으로 記載된 部族이다. 扶餘國은 당시 中國東北部 및 韓半島 地域에 있던 部族 가운데 가장 強大했던 部族國家였고 또 大陸의 先進文化를 다른 部族보다 앞서 導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이 後에 南下하여 高句麗를 建國하였으며 扶餘族이 高句麗의 基幹部族이 되었다.

扶餘國에 대해서는 〈後漢書〉東夷傳 扶餘國條에,

「……以員柵爲城 有宮室倉庫牢獄……」

이란 記錄이 있다. 이 記錄에 대해서는 아무런 問題되는 內容은 없고 그 뜻 그대로 “둥글게 木柵을 둘러 城을 삼고 宮室 倉庫 牢獄이 있다”라고 解釋된다. 이 記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9) 金元龍「新羅家形土器考」金載元博士回甲記念論叢 乙酉文化社刊 1969年.

(10) 前掲 註 6 參照.

당시의 住宅에 있어서 벌써 階級이나 階層에 따라서 規模나 모습에 差異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 特別히 倉庫와 牢獄의 存在를 明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住宅의 機能分화가 相當히 進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이 後의 高句麗 住宅에 連結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 時期에 法律에 該當되는 規制가 있었던 것도 牢獄의 存在로 짐작할 수 있다.

이 記錄에서 「宮室」이라고 말 한 것은 다른 部分에서의 「穴居」나 「穴處」 또는 뒤에서 말 하게 될 「土室」 등으로 表現된 당시의 住居와 比較한다면 적어도 堅穴住居가 아니라는 것은 分明하다. 특히 中國인들이 보아 「宮室」이라고 한 點을 보면 이 「宮室」은 매우 發達된 技法과 樣式으로 된 建物로서 後說하는 高句麗의 住宅 또는 殿閣들과 비슷한 建物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 建物은 적어도 扶餘國의 支配階級에 속하는 사람들의 住宅이었을 것이고 결코 一般庶民들의 住宅이 아닐 것이다. 아마도 當時의 대부분의 庶民들의 住宅은 堅穴住居거나 또는 後에 言及될 「草屋土室」이라고 表現된 半堅穴住居거나 簡單한 地上住居였을 것이다. 遺蹟上으로 보아도 많이 發見된 것은 아니나 韓半島 北部地方에서 鐵器를 出土하는 堅穴住居地가 發見된 바가 있는 것으로 보아도 당시에 堅穴住居가 있었던 것을 證明할 수 있다.

〔濊〕

濊는 中國 東北 邊境에 割居하던 部族으로 韓民族의 根幹을 이루는 한 部族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一般的으로는 濊貊族이라고 불리기도 하나 濊族과 貊族이 同一部族인지 다른 部族인지에 대해서는 學界에 異論이 있다.

濊族의 原住地에 대해서는 確實한 史料가 없어나 紀元前 2~3世紀頃에 南쪽에서는 漢族에게 그리고 西쪽에서는 蒙古系의 遊牧民들로 부터의 壓迫으로 점차 東北方으로 移動하여 지금의 滿洲 東部에서 韓半島의 東部 및 中部地方에 걸쳐서 定住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江原道의 대부분과 咸鏡道 南部를 占有 居住했던 部族이다.

이 濊에 대해서 역시 <後漢書>나 <三國志>에 거의 같은 內容의 記錄이 記載되어 있다. 그 記錄은,

「……多所忌諱 疾病死亡 輒捐棄舊宅 更造新居……」

이다. “疾病으로 死亡하면 이를 꺼리고 두려워 함이 많아 번번이 舊宅을 버리고 새로이 新居를 만든다”라는 것이다. 흔히 原始民 또는 未開民族 사이에서는 죽음에 대한 畏怖心으로 집에서 사람이 疾病으로 죽으면 그 집에 死神이 붙었기 때문이라고 하여 그 집을 버리고 새로운 집을 만들어 그곳에서 사는 風習을 갖고 있는 일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記錄도 이러한 風習을 말하는 것으로서 充分히 있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에 대한 遺蹟上으로서의 確認은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사람이 집에서 疾病으로 死亡했기 때문에 그집을 버렸다면 당연히 그 死體를 그 집 안에 그대로 두고 혹은 집 안에 埋葬하여

집을 버렸을 것으로 생각되나 지금까지는 竪穴住居址 안에서의 死體의 發見은 燒死體 以外에는 發見된 바 없고 또 埋葬된 形態로 住居址 속에서 死體가 發見된 例가 없다. 日本에서는 死後 竪穴住居址 內에서 埋葬된 形態로 人骨이 發見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 나라에도 그러한 遺蹟이 發見될 可能性은 있다고 본다. 특히 江原道나 咸鏡道地方에서 그러한 것이 發見될 可能性은 크다. 그러나 이러한 風習이 극히 限定된 一部地方에서 행하여졌던 것이 特殊한 風習이라 하여 中國에 傳하여져 이런 記錄으로 남겨진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한 경우 이것을 遺蹟上으로 確認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韓〕

韓半島에서 가장 일찍 文化가 發達한 大同江流域의 古朝鮮地域 南쪽 즉 漢江 以南의 地域에 定住하고 있던 種族이 韓族이다. 韓半島의 古代部族은 그 大部分이 中國大陸의 東北地方에서 南으로 移動하면서 定住地를 求하여 定着한 것으로서 이들 가운데 가장 일찍 漢江以南의 地域에 定着했던 것이 韓族이었다. 이 韓族은 다시 몇 몇 小部族으로 形成되어 있어 이 小部族이 後에 馬韓 弁韓 辰韓의 三韓으로 分立하여 部族國家를 세우게 된다. 이에 대해서 <後漢書>에는 韓을 一括하여 言及하고 있으나 <三國志>나 <晉書>에서는 이들을 따로 記錄하고 있다.

韓에 대하여 <後漢書> 東夷傳 韓條에는,

「……有三種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辰……邑落雜居 亦無城郭 作土室形如家 開戶在上……」

이라고 있고, <三國志> 魏志 東夷傳 韓條에는,

「……居處作草屋土室 形如冢 其戶在上 舉家在中……」

이라고 記錄되어 <三國志>의 記錄이 좀 더 具體적으로 說明되어 있다.

이 記錄에 대해서는 일찍 많은 學者에 의하여 比較的 깊은 研究가 이루어졌으나 그들의 論證은 充分히 納得될 만 한 것은 못 되었다. 우선 이 두 記錄에서는 당시의 住居를 「土室」 또는 「草室土室」이라고 表現하고 있는 데에 注意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 한 바와 같이 中國의 古文獻에서 「穴居」 또는 「穴處」라고 表現한 것과는 顯著한 差異가 있는 表現이다. 「穴居」라고 하지 않고 「土室」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것은 보통의 竪穴住居가 아니라는 것을 틀림 없을 것이다. 竪穴住居가 아니라면 이것은 당연히 地上住居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單純히 地上住居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開戶在上」 또는 「其戶在上」이란 記錄에서 地上住居에서는 그러한 狀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野村孝文 教授는,

「草屋土屋로서 出入口는 그 위에 있어 그 모습은 무덤같다고 記錄되어 있으나 이에 의하여 想像하면 竪穴式的 住居로서 그 竪穴은 맞배집인지 우진작집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떤든 竈을 이은 지붕을 덮고

出入口는 그 지붕의 傾斜面에 있었다고 생각된다」——筆者 譯⁽¹¹⁾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論文에 掲載되어 있는 그림에 의하면 住居의 처마끝이 完全히 地上에 닿은 순수한 竪穴住居를 나타내고 있다. 아마도 그 出入口를 지붕 傾斜面에 마련했을 것이라는 見解는 「其戶在上」이란 記錄에 의한 것일 것이나, 筆者의 見解는 이것과 다르다. 그것은, 앞서서도 말 한 바와 같이, 「土室」이란 집의 처마가 地表에 닿은 竪穴住居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처마가 地表에 닿은 竪穴住居였다면 中國인들이 「土室」이라고는 表現 않고 「穴居」 또는 「穴處」라고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土室」이란 竪穴住居이기는 하나 竪穴住居의 壁體가 地表 위로 올라오고 지붕 처마 끝도 地表에서 떨어진 所謂 半竪穴의 住居였다고 생각한다.⁽¹²⁾ 그것은 外部에서 보면 매우 낮은 집으로 처마도 낮고 지붕을 풀로 이은 草家이기 때문에 外見이 마치 무덤 같이 보이는 「草屋土室」이었을 것이다. 그러한 집의 出入口가 지붕 傾斜面에 있다면 出入에도 不便할 뿐만 아니라 빗물 處理도 매우 어려웠을 것이므로 그렇게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아마도 半竪穴의 地上에 올라 온 壁面 一部를 잘라서 出入口로 했을 것이며 이것을 屋內에서 본다면 「其戶在上」 또는 「開戶在上」이라는 表現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그 類例가 그다지 많지는 않았으나 無文土器文化期에 속하는 竪穴住居址 가운데 出入口가 竪穴 壁面 一部를 잘라 外部로 突出한 것이 있었던 것으로도 立證할 수 있는 것이다.

이 記錄에 대한 또 다른 한 見解가 일찍부터 있었고 最近에도 朱南哲 教授에 의해 提起된 바 있었다.⁽¹³⁾ 그 說은 村田治郎 博士의 有孔天井說로서 上記文獻을 引用하여 中央 내지 東北亞細亞에 分布한 住居形態라 했고⁽¹⁴⁾ 朱 教授 역시 이와 같은 住居形態를 캐나다地方의 原始形住居를 들어 꼭 記錄에 合致되는 住居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說 역시 「穴居」 또는 「穴處」와 「室」이란 表現에 대한 檢討가 不足했고, 遺蹟의 實態를 考慮치 않았던 흠이 있으며 지붕 꼭대기에 出入口를 만든 住居가 住居로서 使用될 수 있는 氣候的 條件을 勘案하지 않았던 缺陷이 있어 올바른 解釋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¹⁵⁾

〔辰韓〕

辰韓에 대해서는 〈三國志〉에서는 그것을 辰韓과 弁辰으로 갈라서 記載하였고 別途로 弁辰條를 두고 있으면서 이 弁辰이 辰韓과 雜居하고 있다고 했고 그 風俗도 辰韓과 같다고 하였다. 〈後漢書〉에서는 앞에서 말 한 바와 같이 馬韓, 辰韓, 弁辰의 三韓을 記載한 것으로 〈三國志〉에서 말하는 弁辰은 〈後漢書〉에서 말 하는 弁辰이며 그것이 弁韓인 것 같다. 〈三國志〉에서 말하

(11) 野村孝文「朝鮮住宅の變遷概要」朝鮮と建築 第20輯 10號

(12) 拙稿「竪穴住居와 半竪穴住居」〈張起仁先生回甲記念論文集〉1976年

(13) 朱南哲「古文獻에 나타난 “開戶在上”과 “草屋土室”에 대하여」建築 第20卷 第64號, 大韓建築學會 1977.

(14) 村田治郎「東洋建築系統史論」(其三)〈建築雜誌〉第47輯 546號 日本 建築學會.

(15) 前掲 註12 參照.

는 弁辰은 辰韓을 構成하는 一部族인 것인 듯 하다. 여기서는 이런 解釋에 따라 論하기로 하겠다.

辰韓에 관해서는 <三國志>에,

「…有城柵 其言語不與馬韓同…」

이라고 있고, <晉書>에도 같은 內容의 記錄이 있다. 또 弁辰에 관해서는 <三國志>에,

「…與辰韓雜居 亦有城郭 衣服居處與辰韓同 言語法俗相似 祠祭鬼神 有異施 竈皆在戶西…」

라고 記錄되어 있다. 이들 記錄에 대해서는 特別히 論述할 만한 問題는 없는 것 같다. 다만 “부엌이 모두 문 西쪽에 있다”라는 記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만 한 점이 있다. 짧은 이 內容만으로는 당시의 住居 모습을 推測하기 어려우나 부엌이 屋外에서 바라볼 수 있는 住居라면 이 住居는 地上住居일 可能性이 크다. 그러나 그 부엌이 문 西쪽에 있다는 것이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 判斷하기 어렵다. 지금의 庶民住宅 가운데 특히 嶺南地方이나 湖南地方의 民家에서 부엌이 主屋의 西端에 있는 것이 적지 않으나 같은 地方에서도 부엌이 主屋 東端에 있는 것이 있고 또 이들이 서로 混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엌의 자리는 그 地方의 慣例에 따라 主屋의 어느 한 쪽에 놓이기도 하나 住宅의 立地條件 즉 周邊의 地形이나 風向 등에 따라 東쪽에도 놓일 수 있고 또 西쪽에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正確한 統計에 의한 것이 아니나 主屋 西端에 부엌이 位置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이 생각되기는 한다. 따라서 이 記錄의 경우에도 住宅의 모습이 明確하지 않기 때문에 速斷할 수 없으나 住居의 出入口 西쪽에 부엌이 主로 設置된 地方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그들(中國人)의 그것과 달랐기에 이러한 記錄으로 남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直接 住居와는 關聯이 없으나 <三國志>에 「城柵」이라고도 있고 또 「城郭」이라는 名稱이 있으니 이에 대해 좀 살펴 보도록 하겠다. 1960年代에 國立博物館에서 實施한 梁山貝塚에 대한 發掘調査에서 發見된 한 遺構가 생각난다. 이 貝塚는 東西로 길게 뻗은 丘陵 東端가까이는 한층 높은 地形을 이루어 있었다. 이 貝塚를 調査하는 過程에서 이 丘陵을 南北으로 찢른, 물이 없는 濠가 發見되었고 그 濠에 따라 東쪽에 直經 20cm 程度의 기둥구멍이 4~50cm 間隔으로 一列로 나타났던 것이다. 아직 正式報告書가 發表되지 않아 正確한 數値를 記憶 못하나 濠의 上部幅은 2m 餘, 깊이는 1.5m 程度였다. 이 遺構는 分明히 丘陵 東쪽 높은 部分에 中心을 둔 要塞로서 西쪽에서 外敵이 侵入하는 것을 막기 위한 濠와 木柵으로 判斷되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 記錄에 있는 「城柵」일 것이며 前述한 挹婁條의 「員柵」이란 것에 該當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된다. 丘陵 東쪽의 높은 部分에는 部族의 酋長이나 指揮者들의 集團이 居住한 것일 것이다. 「城郭」이란 것은 이런 「城柵」과는 分明히 다른 構造로 된 것일 것이며 三國時代의 많은 城郭

가운데 어떤 것은 이 時期에 만들은 것일 것이다. 1973년에 調査된 城山貝塚의 丘陵 頂上의 石城을 우선 三國時代의 것으로 보고 있으나 貝塚과의 關係로 充分히 이 時代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石城이다.

「祠祭鬼神 有異施」란 記錄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리 나라 各處에 部落神을 비롯하여 각종 雜神에 祭 올리는 風習이 있고 그 神에 따라 儀式도 다른 것이나, 이 記錄으로는 神殿이나 儀式場所를 建立하여 祭神한 것인지 또 弁辰과 辰韓과의 사이에 差異가 있었는지는 잘 判斷할 수 없다.

〔弁韓〕

여기서 辨韓이라 한 것은 <三國志>에서 말 하는 弁辰임은 이미 말 했다.

<三國志> 東夷傳 弁辰條에,

「魏略曰 其國作屋 橫果木爲之 有似牢獄也」

라고 있다. 여기서 「作屋」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것은 堅穴住居와 같은 것이 아니고 地上住居 또는 地上住居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半堅穴住居가 생각 되나, “나무를 옆으로 포개어 만든다”는 것을 보면 當然히 地上住居이며 所謂 말하는 “귀틀집”임이 分明하다. 통나무를 여러개 포개어 만든 집이기 때문에 窓戶를 만드는데 制約이 크고 따라서 “누옥과 비슷하다”라는 말도 充分히 理解 되는 表現이다.

귀틀집은 原來 北方系의 것으로 酷寒의 高原地帶나 高山地帶로서 樹木이 많은 地方에 흔한 建物이며 이것이 韓半島의 南部地方에 割居하던 部族의 住居 모습을 記錄한 글에 볼 수 있는 것이 얼마간의 奇異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귀틀집은 우리 나라에서는 일찍 江原道와 咸鏡道地方에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智異山의 火田民의 住宅에서 귀틀집이 確認되어 있고⁽¹⁶⁾ 鬱陵島에서도 筆者가 直接 目擊한 바 있다. 이러한 귀틀집은 그 部材와 構造의인 特色으로 보아 그 形態가 地域的 또는 時代的으로 그렇게 큰 變化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三國志>에서 말하는 建物の 모습도 지금 볼 수 있는 귀틀집과 큰 差異 없는 建物이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다만 高句麗壁畫古墳의 그림 속에서 볼 수 있는 高床의 귀틀집 倉庫나 日本의 所謂 正倉院이라고 불리우는 귀틀집 高床倉庫와는 다른 地上建物이었을 것이다.

III

古代의 住宅에 관한 文獻記錄은 역시 <三國志>나 <新唐書> 등의 中國의 文獻과 우리 나라 文獻인 <三國史記> 나 <三國遺事>등이 있다. 또 이 時代의 住居關係 遺蹟은 거의 發見되지 않았기 때문에 高句麗壁畫古墳의 住宅關係 그림 以外에는 이들 얼마 되지 않은 文獻資料만이 現在로는 당시 住宅을 研究하는 唯一한 資料라 할 수 밖에 없다.

(16)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全南篇) 文化財管理局 1969年

〔高句麗〕

高句麗의 住宅에 관한 記錄을 찾을 수 있는 文獻資料는 中國의 古代文獻 뿐이며 그 가운데 比較的 詳細한 記錄이 記載된 것이 〈三國志〉와 〈新唐書〉이다. 이 가운데 〈三國志〉의 記錄은 그 內容으로 보아 高句麗에 佛教文化가 導入되기 前의 事實, 즉 全般的으로는 아직 原始的인 文化 段階를 벗어나지 못했던 時期의 記錄이며 〈新唐書〉의 記錄은 그 記錄 속에 「佛廬」란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當然히 佛教文化가 導入된 以後의 事實을 말한 것이다.

〈三國志〉東夷傳 高句麗條에는,

「……都興丸都之下 方可三千里 戶三萬 多大山深谷無原澤 隨山谷以爲居 食澗水 無良田 雖力佃作 不足以實口腹 其俗節食 好治宮室 於所居之左右 立大屋 祭鬼神 又祀靈星社稷……其國中大家不佃 坐食者萬餘口 下戶遠擔米糧魚鹽供給之……無大倉庫 家家自有小倉 名之爲梓京……其俗作婚姻 言語已定 女家作小屋於大屋後 名堦屋……」

라고 記錄되었다. 여기서 말 하는 「宮室」이란 前述한 〈後漢書〉扶餘國條에 있던 「宮室」과 같은 表現이며 이 記錄의 內容으로 보면 꼭 宮殿建物을 말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아마도 文中에 있는 「大家」라고 불리우는 階級에 속하는 사람들의 住宅이거나 또는 貴族階級에 속하는 사람들의 住宅을 포함한 말인 듯 하다. 따라서 이런 財力이나 權力이 있는 사람들은 自己 住宅 그것도 「宮室」이라고 表現될 程度로 規模가 크고 華麗한 住宅을 짓는 것을 좋아했음을 알 수 있다. 이 「宮室」이라고 表現된 住宅은 扶餘國의 그것과 거의 같은 것이었을 것이고 高句麗壁畫古墳에서 볼 수 있는 殿閣圖 등의 建物들이 이에 該當하는 建物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筆者가 貴族階級과 「大家」를 區別해서 말 한 것은 耕作하지 않고 즉 勞働을 하지 않고 生活하는 者인 大家가 「萬餘口」라 할 때 「戶三萬」이 果然 몇 萬口가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數的으로 보아 貴族階級으로 하기는 너무나 數가 많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好治宮室」의 俗은 少數의 貴族과 大家들의 俗이고 그 앞의 「節食」은 一般庶民들의 俗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文脈으로 보아 「祭鬼神」라고 한 것 까지가 한 句節로 보이기 때문에 이 俗들은 적어도 「大家」以上の 사람들의 風習이라고 보는 것이 妥當하다. 따라서 “飲食을 節約하면서도 住宅(宮室)을 짓는 것을 좋아 한다”란 뜻으로 보이며, 貴族階級の 住宅, 그것은 邸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 「大家」들에게도 그런 氣風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時代에는 階級的의 差異와 階層의 差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大家」들의 住宅이나 貴族의 住宅에서도 서로 그 規模나 樣式에 얼마간의 差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 住宅을 모두 통털어서 「宮室」이라고 表現한 것이라고 본다.

祭祀를 위한 施設로서 居處의 左右에 「大屋」을 세운다고 하고 있으나 이 「大屋」에 대해서는 지금 그 實態를 論할 수 있는 充分한 資料가 없다. 다만 婚姻의 言約이 이루어지면 女家の 「大屋」뒤에 「小屋」을 만들며 그것을 「堦屋」이라 이름한다고 했다. 여기서 말 하는 「大屋」이 祭祀

를 위해서 세워진 「大屋」을 가리키는 것인지 또는 女家の 住宅의 主屋을 말하는 것인지 確實치 않다. 女家の 住宅의 主屋을 말하는 것이라면 「宮室」과 같이 「室」字를 使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또 그 反面에 「堦屋」의 風習이 一般的인 風習으로서 「宮室」이라고 할 수 없는 一般庶民들의 住宅의 主屋을 포함해서 「大屋」이라고 總稱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大屋」이라고 하고 또 「小屋」라고 말하는 建物과 「宮室」과 區別되어 記錄된 것은 漢字 使用을 특히 嚴格히 取扱하는 中國의 記錄이기 때문에 틀림 없이 이들 사이에는 서로 相當히 다른 要素를 갖는 建物이었다고 생각된다. 「室」이라고 하고 「屋」이라고 불리우는 建物에 서로 差異가 있었다면 「室」이라고 하는 建物은 分明히 完全한 地上住居로서 發達된 建築技法에 의하여 세워진 建物일 것이다. 그리고 「屋」이라고 불리우는 建物은 「屋」이라는 글에 지붕이란 뜻이 있음을 勘案할 때 지붕이 主體가 된 建物 또는 지붕이 특히 잘 눈에 띄우는 建物이라고 解釋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分明히 堅穴住居이거나 또는 堅穴住居와 같은 原始的인 手法으로 만들은 매우 素朴한 地上建物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建物은 지붕 처마가 꼭 땅에 닿은 堅穴住居라고만 생각할 必要는 없을 것이다. 처마가 얼마간 地上에서 떠러진 그런 建物 즉 前述한 「草屋土室」같은 半堅穴住居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즉 이 記錄에서 말 하는 「大屋」이나 「小屋」은 그런 堅穴住居나 半堅穴住居의인 建物 또는 그와 비슷한 地上建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判斷하는 것이다. 祭祀를 위한 施設 즉 神殿 같은 建物은 往往 古來부터 내려오는 傳統的인 樣式에 강한 執着을 나타내는 傾向이 많고 또 「堦屋」과 같은 一時的인 建物이며 婚姻이란 강한 因習을 남기는 通過儀禮에 속하는 風習이면 古來로부터 내려온 家屋의 形式을 慣例로 採用하고 있었을 可能性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다. 高句麗 初期에 있어서 벌써 堅穴住居를 잊어버린 住居形式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 못된 생각일 것이다. 그 당시에도 一部에서는 堅穴住居가 存在했고 또 어떤 種類의 儀式에서는 強하게 그런 風俗이 남아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實質的이며 近來 北韓에서는 高句麗時代의 堅穴住居址가 發見되기도 했다.

또 「大倉庫」는 없고 집집마다 「小倉」이 있고 이것을 「桴京」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 「桴京」에 대해서는 先學에 의한 비교적 많은 考證 研究가 있으며 「桴京」은 널판자로 바닥을 짠 高床의 작은 倉庫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高句麗 初期라면 아직 伐木器具들이 充分히 發達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一般的으로는 木材의 大材를 求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특히 판자를 얻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規模가 큰 木造倉庫를 집집마다 갖는다는 것은 거의 없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 「桴京」은 高句麗壁畫古墳인 麻線溝 第1號墳에서 볼 수 있는 高床의 귀틀집으로 된 倉庫가 그 典形的인 것이었다고 推測된다.

그런데 이 記錄에 登場하는 「宮室」이나 「大屋」「堦屋」 또는 「桴京」이라고 불리우는 建物들이 果然 高句麗의 一般庶民들의 住宅에서 볼 수 있었던 建物들이었을까. 물론 「宮室」은 貴族階級이나 혹은 「大家」에 속하는 사람들의 住宅이었음은 틀림 없을 것이나 그밖의 여러가지 建物이 모

두 庶民住宅에 具備되어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것들은 어느 程度 以上の 財力이나 權力이 있는 階級 또는 階層의 住宅에 關聯하는 建物들이었다고 믿어진다. 「大家」를 위하여 米糧 魚鹽을 멀리서 나르다 供給하기 위하여 勞働에 從事하는 「下戶」라고 불러주는 下層階級이나 대부분의 一般庶民들의 住宅에도 鬼神을 祭祀하는 「大屋」이나 「杼京」 또는 婚姻時에 一時的으로 使用되는 建物인 「壻屋」 등이 具備되어 있거나 具備할 수 있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아마도 庶民이나 「下戶」의 住宅은 堅穴住居이거나 極히 原始的인 地上住居였을 것이고 고작 작은 규모의 창고 施設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들 집에는 祭祀를 위한 「大屋」이나 婚姻한 女息을 위한 「壻屋」을 세울 餘裕조차 없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事實을 明確히 究明할 수 있는 充分한 資料가 없는 것도 事實이다.

〈新唐書〉東夷傳 高麗條에,

「……庶人……俗喜突投……壺蹴鞠 食用蓬豆蠶簋疊洗 居依山谷以艸茨屋 惟王宮官府佛廬以瓦 寔民盛冬作長炕爐火以取暖……」

이라고 있고, 〈舊唐書〉에도 같은 記錄이 있다.

이 記錄은 高句麗에 佛教文化가 導入된 後의 狀況을 말한 것임은 文中의 「佛廬」라는 말로서 確實한 것이며 王宮이나 官府 및 佛教寺院 등의 建物の 지붕을 기와로 잇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 民家는 山과 溪谷에 따라 세워졌고 지붕은 짚이나 긴 풀로 이은 초가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특히 注目해야 할 記錄은 “寔民은 겨울에 많이 長炕을 만들어 불을 때어 暖을 取한다”란 記錄이다. 이것은 分明히 溫突이나 또는 溫突의 始源인 暖房施設을 말하는 것이다. 溫突에 關連된 先史時代 遺蹟으로는 日政時에 發掘調査된 雄基 松坪洞의 貝塚 밑바닥에서 發見된 堅穴住居址에 溫突의 火道로 보이는 遺構가 發見되었다고 傳하고 있으며, 解放後에 調査된 高句麗時代의 建物址인 土城里的 上部遺蹟에서도 溫突의 火道가 發見되었고, 그 밖에도 路南里遺蹟에서 高句麗時代 住居址가 發見되었다고 한다.⁽¹⁷⁾ 그러나 文獻記錄으로서는 〈舊唐書〉의 記錄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長炕」은 지금 우리 나라 모든 地域의 住宅에서 採用되고 있는 溫突의 前身的인 暖房施設이었음은 틀림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溫突의 前身인 「長炕」도 모든 高句麗人에 의해 採用되었던 것이 아님을 이 記錄은 말하고 있다. 그것은 「寔民」들 사이에서 행하여졌던 것이고 「庶人」들 사이에서는 採用되지 않았던 것 같은 印象을 이 記錄은 풍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庶人」들의 風俗에 이러한 말이 없고 이어 「寔民」에 관한 일로 이 「長炕」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印象을 풍기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庶人」이나 「寔民」이란 어떠한 階級 또는 階層에 속하는 사람들인지 살펴보자. 「庶人」들은 “그 風習이 投壺나 蹴鞠 등의 노름을 좋아하고 飲食을 먹을 때는 높은

(17) 李炳善 「中江郡 土城里 原始 및 古代遺跡發掘中間報告」 文化遺產 1966年 5號.

정찬영 「우리나라 溫突 火道의 由來와 發展 考古民俗 1966年 4號.

竹器나 木器와 뚜껑 있는 그릇이나 文樣이 새겨진 술잔이나 큰 통 등의 매우 高尚한 祭器와 같은 그릇을 使用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生活을 할 수 있는 階級の 사람을 여기서는 「庶人」이라고 했다. 그러나 現在 우리들이 日常 使用하는 「庶人」 즉 庶民이라는 것이 果然 이러한 生活을 할 수 있었던 階層의 사람들이었을까 믿어지지 않는 일이다.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庶人」이란 前述한 〈三國志〉에서 말하는 「不佃坐食」하는 「大家」들의 生活의 樣相을 말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것은 王族이나 貴族階級은 아니나 적어도 中級 또는 下級の 官吏나 地方의 權力者나 豪族 등 比較的 富裕한 生活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生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寔民」이란 「庶人」 즉 「大家」보다 낮은 階級인 農民을 주로 하여 前述의 「下戶」나 奴隸들로서 勞動에 의하여 生活을 營爲하는 階級の 사람들이며 그것은 당시의 高句麗人의 大部分을 차지했던 階層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寔民」이 위에서 말한 대로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말한다면 高句麗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住居에 暖房施設로서 溫突 또는 溫突의 始源的인 施設이 使用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고 또 그 領域이 冬季의 酷寒地帶이기에 그러한 暖房施設이 많이 普及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百濟〕

百濟의 住宅에 관한 文獻資料는 매우 貧弱하다. 〈新唐書〉 東夷傳 百濟條에는 「俗與高麗同」이라고 있을 뿐이다. 그 밖의 이 時代에 관한 記錄이 收錄된 中國文獻에서도 거의 같은 記錄이 있을 뿐이며 直接 住宅에 관한 記錄은 보이지 않다.

우리 나라 文獻으로는 〈三國史記〉 百濟本記 第三에

「蓋鹵王二十一年……而城郭不葺 宮室不修……百姓之屋廬屢壞於河流 臣竊爲大王不取也 王曰諾 吾將爲之 於是盡發國人 悉土築城 卽於其內作宮樓閣臺榭 無不壯麗……」

라고 있을 뿐이다. 이 글은 高句麗 僧 道琳이 百濟의 國力을 消耗시키기 위해 蓋鹵王을 꾀여 하여 왕에 進言한 것과 왕이 이 꾀임에 빠져 國力을 消耗하게 되어 高句麗에 크게 浸攻 當하게 되는 史話인데 여기에 나오는 建物에 관한 用語들은 한번 吟味할 만 하다.

이 記錄과 〈新唐書〉 등의 「俗與高麗同」이란 글에 의하면 그 風俗은 高句麗와 같다고 하고 또 「宮室」「屋廬」「樓閣」 또는 「臺榭」라는 建物의 名稱이 나온다. 이들 가운데 庶民의 住宅은 分明히 「屋廬」라고 말하여진 것이다. 「屋廬」가 어떤 모습의 住居였는지 具體的으로 알 수 있는 資料가 없거나 극히 素朴한 原始的인 手法으로 된 草屋이었을 것으로 推測된다. 아마도 高句麗의 住居에서 考察한 庶民住宅과 큰 差異 없는 建物이었다고 믿어진다. 그리고 高句麗 領域에 比해서는 좀 더 따뜻한 地域을 領有했던 百濟이기는 하나 庶民 住宅에는 溫突이나 그의 始源的인 暖房施設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적어도 百濟에서 그러한 施設이 없었다는 根據는

전혀 없고 또 있었다는 積極的인 根據도 없다.

「宮室」「樓閣」「臺榭」들은 宮殿建築이나 記念物的인 建物에 該當되는 것이며 여기서는 宮殿內에 있는 建物들을 말하는 것임에 틀림 없다. 그러한 建設이 “壯麗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細部の 樣式이나 手法에 中國의 北部地方의 影響을 많이 받은 高句麗와는 얼마간의 差異가 있었을 것이나 大體的으로는 高句麗의 宮殿이나 殿閣들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되며 그 具體的인 모습은 高句麗 古墳壁畫에서 엿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新羅」

新羅의 住宅에 관한 文獻記錄은 百濟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우 적다. 中國의 古文獻에는 거의 住宅에 관한 記錄을 찾아볼 수 없고 우리나라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에서 얼마간의 記錄을 찾을 수 있고 그 內容은 百濟의 경우 보다는 훨씬 많다.

여기서는 便宜上 古新羅와 統一新羅時代를 區分하지 않고 이들 住宅에 關한 記錄을 考察하도록 하겠다.

新羅의 住宅에 관한 文獻記錄 가운데 가장 重要的인 것은 <三國史記> 卷第33, 志第2 屋舍條에 있는 記錄이다. 이 記錄은 當時의 社會階級の 高下에 따라 住宅의 規模, 樣式, 用材는 물론 裝飾과 住宅의 調度品 등에 이르기까지 制限을 加한 住居 規制法이다. 이러한 規制가 언제 制定되었으며 또 얼마 만큼이나 遵守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當時의 住宅 樣相을 살피는데 基本的인 資料가 된다. 그 內容 全文은,

眞骨 室長廣不得過二十四尺 不覆唐瓦 不施飛簷 不雕懸魚 不飾以金銀鐵石五彩不磨階石 不置三重階 垣牆不施梁棟 不塗石灰 簾緣禁錦麗綺野草羅 屏風禁繡床不飾玳瑁沈香

六頭品 室長廣不過二十一尺 不覆唐瓦 不施飛簷 重椳棋牙懸魚不飾以金銀鐵石白鐵五彩 不置巾階及二重階 階石不磨 垣牆不過八尺 又不施梁棟 不塗石灰 簾緣禁錦麗綺綾 屏風禁繡 床不得飾玳瑁紫檀沈香黃楊 又禁錦薦 不置重門及四方門 鹿容五馬

五頭品 室長廣不過十八尺 不用山楸木 不覆唐瓦 不置獸頭 不施飛簷重椳花斗牙懸魚 不以金銀鐵石銅鐵五彩爲飾 不磨階石 垣牆不過七尺 不架以梁 不塗石灰 簾緣禁錦麗綺網絁 不作大門四方門 鹿容三馬

四品至百姓 室長廣不過十五尺 不用山楸木 不施藻井 不覆唐瓦 不置獸頭飛簷椳牙懸魚不以金銀鐵石銅鐵爲飾 階砌不用山石 垣牆不過六尺 又不架梁 不塗石灰 不作大門四方門 鹿容二馬

外眞村主與五品同 次村主與四品同

이상과 같이 屋舍의 制限은 방의 넓이와 크기 建築用材 및 지붕의 裝飾기와에서 처마의 形式 料栱의 모습 裝飾金具, 建物の 基壇에 사용되는 石材와 그 治石方法, 石階段의 段數와 基壇의 形式 그리고 垣牆의 높이와 그 構造 및 마감方法, 발 가장자리의 裝飾에서 병풍, 자리와 마루 등의 裝飾과 用材 등을 規制하고 大門의 形式과 用馬의 數까지 詳細히 規制하고 있다. 이 屋舍의 規制를 받지 않는 階級은 오로지 聖骨 뿐이며 그 밖의 眞骨에서 庶人에 이르기까지 徹底하게

정해졌다.

여기서는 眞骨에게 加해진 屋舍 規制를 考察하여 眞骨과 聖骨의 住宅을 類推하고 나아가서 四頭品과 百姓에 該當되는 屋舍規制를 檢討하므로써 당시의 庶民들의 住宅의 樣相을 推測하도록 하겠다.

眞骨의 家舍에서는 建物 自體로는 방의 넓이가 24尺을 넘지 못하고 지붕기와는 처마 끝의 막쇠기와를 使用하지 못하고 浮櫺을 施設한 겹처마를 禁하고, 지붕 合閣을 裝飾하는 懸魚⁽¹⁸⁾를 달지 못하며 집을 金, 銀, 銅 등으로 裝飾하거나 丹青하지 못하게 하였다. 基壇에 대해서는 石材를 곱게 갈지 못하고 三重基壇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規制되었다. 여기에서 「三重階」라는 것이 얼핏 “3段의 階段”이란 뜻으로 解釋되기 쉬우나 “3段의 階段”을 갖는 정도의 基壇은 그다지 높은 基壇이 되지 못하고 지금의 民家에서도 그 程度의 基壇의 階段은 舍廊채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合當치 않다. 그러므로 이 「三重階」를 三重基壇 또는 3段의 基壇으로 理解하는 것이 옳을 듯 하다. 그것은 李朝王宮의 正殿 등이 二重 또는 三重的 基壇을 갖고 있고 新羅時代에도 王宮의 重要 建物에는 三重基壇이 있었을 可能性이 充分히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垣牆의 높이에는 制限이 없으나, 보나 도리를 架構하지 못하고 壁을 石灰로 化粧하지 못하였다. 垣牆에 보나 도리를 架構하지 못한다는 것은 寺刹의 廻廊이나 宮殿의 行廊 같이 만들지 못한다는 뜻인 듯 하다. 집안에 거는 발(簾) 가장자리에는 비단이나 毛織의 천으로 裝飾하지 못하고 병풍에 수 놓은 것을 禁하였고 바닥에는 瑠璃이나 沈香으로 裝飾하는 것을 禁했다. 그리고 六頭品에서 禁해진 事實 가운데 眞骨에서 禁하지 않는 것은 기둥 위에 架構되는 枋拱이나 草拱 등이고 建物을 裝飾하는데 白鐵 즉 白鐵(錫)도 할 수 있고 巾階를 設置할 수 있고 또 바닥을 紫檀이나 黃楊으로 갈 수 있고 비단자리를 使用할 수 있었으며 重門과 四方門을 設置할 수 있고, 使用할 수 있는 말의 匹數에는 制限이 없었다. 이러한 眞骨에 속하는 사람들의 住宅의 規制 內容을 보면 아무런 規制를 받지 않는 聖骨에 속하는 사람들의 住宅을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住宅이라 하기 보다 宮殿이라고 할만 한 것이다. 聖骨의 住宅은 建物의 規模에는 制限이 없어 얼마라도 크고 넓은 집을 가질 수 있고 지붕에는 처마 끝에 精巧하게 彫刻된 막쇠기와를 달 수 있고 또 六頭品까지는 使用이 許可된 鬼面瓦나 雜像들로 裝飾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처마를 겹처마로 할 수 있고 合閣에는 懸魚를 매달고 木部 여러곳을 金銀이나 銅으로 裝飾할 수 있었다. 또 기둥머리에는 枋拱을 올리고 草拱을 架構할 수도 있었다. 基壇은 말끔히 깎은 長大石을 使用하여 三重基壇을 만들 수 있었고 垣牆은 廻廊으로 만들 수 있었고 발이나 屏風 같은 屋內 調度品이나 建物 마루바닥 등에 어떠한 高貴한 材料를 使用하여 裝飾할 수도 있었다. 建物에는 丹青할 수 있고 門은 重層의 樓門을 만들 수 있고 垣牆 四方에도 門을 設置할 수 있었다. 즉 聖骨에 속하는 사람들의 住宅에는 建物로 形成할 수 있는 어떠한 規模든 構造 樣式 및 用材를 採用할 수 있었고 그 手法이나 裝

(18) 懸魚는 팔작지붕 合閣部 頂上에 垂下하는 裝飾으로 魚尾形임. 우리 나라에는 現存古建築에는 전혀 볼 수 없는 것이다. 新羅時代의 屋形 碑石의 檐首에 그것이 彫刻된 것이 있다.

飾에서도 建築에 있을 수 있는 모든 手法과 裝飾을 쓸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住宅은 어떤 住宅이었을까, 그것은 그대로 宮殿이라고 할 수 있는 建物들이다. 高句麗 古墳壁 畵에서 볼 수 있는 殿閣과 같은 그런 建物이거나 오히려 그 보다 더 豪華로운 建物들이었을 것이다.

四頭品이나 百姓들의 住宅은 방의 크기나 넓이는 15尺을 넘지 못하고 用材로는 미루나무를 使用하지 못하며 막쇠기와나 鬼面 雜像 등의 裝飾瓦를 쓰지 못하고 浮椽이나 懸魚 등을 施設하지 못하고 金銀이나 銅으로 裝飾하고 丹青 등도 當然히 禁止되었다. 基壇에는 山石 즉 長大石을 使用하지 못하며 垣牆 높이는 6尺을 넘지 못하며 大門이나 四方門을 架構치 못하며 말은 두 마리까지 댈 수 있다고 하였다.

以上과 같은 住宅 規制 內容을 보면 當時의 住宅建築의 樣相을 대강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分明히 發達된 木造建築 手法에 의해서 만들어진 建物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貴族 住宅의 豪華 雄壯함은 물론 下級官吏나 百姓들의 住宅도 相當한 規模와 格式을 가질 수 있도록 許容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四頭品이나 百姓들에 許容된 住宅의 規制 範圍內에서의 最大 最高의 住宅을 생각할 때 그러한 住宅도 地方官吏나 相當히 富裕한 階層에 속하는 사람들에나 가능한 住宅이지 一般庶民들에게는 아무리 許容된다 해도 그들의 形便이 그런 집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것은 「村主」가 어떤 權力이나 地位를 가졌던 官吏인지 잘 알지 못하나 當時의 地方組織이 村 밑에 鄉이나 部曲이 있었던 것을 勘案하면 지금의 郡 程度에 該當되는 地域의 長官이었다고 생각되며 이들에 대해서 「眞村主與五品同 次村主與四品同」이라고 있는 것을 보아도 充分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新羅의 屋舍規制內容에서 짐작할 수 있는 新羅의 貴族에서 庶民에 이르기까지의 住宅의 樣相을 대략 검토해 보았으나 實은 屋舍에 관한 記錄 속에 몇 몇 理解하기 어려운 말 또는 不分明한 用語 등이 있다. 우선 집의 規模를 規定한 곳에서 「室長廣」이란 말이 問題가 된다. 建物規模에 대한 用尺이 東魏尺이든 唐尺이든 여기서는 問題될 바 없으나 規模를 나타내는데 「長廣」이라 한 점이다. 「長廣」을 한 방의 正面과 側面の 길이를 합한 길이인지 또는 어떤 面積을 나타내는데 使用하는 用語로서 그 當時 使用되었던 말인지 確實치 않다. 「室長廣二十四尺」이니 「室長廣一五尺」이라는 數値를 보면 모든 방의 正面과 側面の 길이를 합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 建物の 規模에 대한 規制라고 한다면 너무나 小規模한 住宅이 되어 맞지 않다. 萬一 이것이 한 방의 規模를 가리킨다고 한다면 許容되는 規模의 방을 많이 만드는 것으로 住宅의 全體 規模는 無制限으로 커질 수가 있어 規制의 뜻이 없어진다. 이러한 事實로 보아 당시의 住宅은 高句麗 古墳 壁畵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한 住宅 內에 必要한 建物이 個個의 機能에 따라 각각 獨立하여 세워지며 따라서 사람이 起居하는 建物도 한 방으로 된 建物이며 그 밖의 必要한 施設은 별채로 獨立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방 數에 있어서는 公認

된 家族數와 使用人의 數에 따라 決定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을 경우 四頭品이나 百姓 그리고 地方官吏인 次村主의 住宅이 「室長廣不過十五尺」이란 規模가 納得할 수 있는 規模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解釋은 「室長廣」을 한 방의 正面과 側面의 길이를 합한 數値라는 解釋에 立脚한 見解이다.

또 建物の 基壇에 관해서 「不置三重階」 또는 六頭品에서는 「不置二重階」란 말이 나오는 데 「三重階」나 「二重階」란 말에도 약간 疑問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풀이 한 바 「三重基壇」 또는 「二重基壇」이란 解釋이 가장 妥當한 것으로 생각되나 이에 대해서도 異論은 있을 수 있겠다. 그것은 基壇 前面에 設置되는 階段을 세폭 階段 또는 두폭 階段으로 하는 것이 「三重階」나 「二重階」의 뜻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重」字의 性格으로 보아 앞의 解釋을 筆者는 擇한다.

垣牆에 關한 記錄의 「不施梁棟」이란 말이 있고 五頭品에서 「不架以梁」 등의 말이 있다. 이 가운데 「不施梁棟」이란 말에 대해서는 앞에서 垣牆에 보와 도리를 架構치 못한다고 했고 垣牆에 보와 도리를 架構한 것은 寺刹이나 宮殿에서 볼 수 있는 廻廊 같은 것이라고 判斷했다. 그것은 「梁」은 보를 말하는 것이고 「棟」은 마루(용마루)를 말하는 것이며 마루는 또 도리(桁)와도 相通되기 때문이며 垣牆에 보나 도리 또는 용마루가 架構된다면 그것은 廻廊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垣牆이 高句麗 古墳인 安岳 1號墳의 殿閣圖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五頭品の 「不架以梁」 또는 四頭品の 「不架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기서는 「梁」 즉 보만을 말 하고 있다. 이경우 「棟」은 當然히 禁止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垣牆에서 보만 架構된 것은 果然 어떤 것인가. 서울에 있는 몇몇 古宮의 垣牆 上部 기와 바로 밑에 서까래 같이 보이는 圓木을 끼어 놓은 것이 있다. 순수하게 格式 또는 두터운 垣牆과 위에 이은 기와의 調和를 위한 것이며 아무런 構造的인 效果는 없는 것이다. 이 記錄에서 말하는 「不架以梁」 또는 「不架梁」의 反對로 「架梁」한 垣牆은 이런 것을 말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끝으로 大門에 關한 記錄으로 六頭品은 「不置重門及四方門」, 五頭品 以下는 「不作大門四方門」이라고 있다. 여기서 말 하는 「重門」과 「大門」 및 「四方門」이 모두 檢討되어야 할 말 들이다. 우선 「重門」,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重層의 樓門으로 解釋하였다. 그러나 「重門」이란 말을 “두 겹의 門”으로도 解釋할 수 있는 것이다. 두 겹의 門이라면 外門과 內門이 나란히 서 있는 門을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重門」이 許容되는 것은 聖骨과 眞骨 뿐이므로 重層의 門 즉 樓門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六頭品 以下の 住宅에서도 外門과 內門 또는 狹門 등 住宅內에도 얼마간의 門이 있을 수 있고 李朝住宅에서도 中流 以上の 住宅에서는 大門, 中門, 內門 등이 있기 때문이다. 또 六頭品부터 禁止된 「四方門」이 어떤 門인지 여기서는 단순히 垣牆의 正面 쪽 뿐이 아니고 後面과 兩側面에도 門 架構를 갖는 것을 「四方門」으로 解釋했고 이것 역시 高句麗古墳인 安岳 1號墳의 殿閣圖에 그러한 位置에 각각 門이 設置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解釋에는 筆者 스스로 약간의 疑問을 覺한다. 왜냐하면 六頭品 程度에서 後門이나 側門

이 許容되지 않는다는 것이 納得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後門만 또는 側門만이라면 許容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當時의 社會上의 形便上 六頭品 以下の 住宅에서는 門을 한 곳에만 設置하는 것을 許容한 것인지, 잘 理解되지 않는 말이다. 혹시 「四方門」이란 한 門의 形式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또 五頭品 以下에 禁해진 「大門」이란 것이 어떤 門인지 확실치 않다. 지금 住宅의 正門을 一般的으로 「大門」이라고 부르고 近世까지는 네 기둥을 세워 屋蓋를 올리고 두 짝의 판자문을 단 住宅의 正門을 「大門」이라고 했다. 이 程度의 門이 五頭品 以下에서 禁止되었다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新羅에서 「大門」이라 하는 것은 相當한 規模와 格式을 갖춘 한 樣式의 門을 말하는 듯 하나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전혀 알 길이 없다.

家舍規制 以外에도 <三國史記>에는 卷第3 新羅本記 第11에,

「憲康王六年…九月九日 王與左右 登月上樓 四望 京都民屋相屬 歌吹連聲 王顧謂侍中敏恭曰 孤聞今之民間 覆屋以瓦 不以茅 炊飯以炭 不以薪 有是耶…」

라고 있다. 이에 의하면, 당시 京中에는 民家가 처마를 서로 맞대어 서 있고 지붕은 새로 짓지 않고 기와로 이으며 밥을 짓는데 솥을 使用하고 장작을 쓰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다. 이 글에 의하여 從來 新羅時代에는 慶州의 民家 또는 新羅의 民家は 모두 기와집이었고 밥을 짓는데 솥을 使用한다고 記錄 그대로 믿어 왔던 것 같으나 筆者는 이 말을 그대로 믿지는 않는다. 月上樓가 어느 곳에 있었던 樓閣인지 그 正確한 자리는 알 수 없으나 新羅王宮 안에 있던 한 樓閣임에는 틀림 없을 것이다. 이 樓閣 위에서 볼 수 있는 모든 建物은 기와집이었을 것이며, 또 이 근처에 있는 집들도 모두 기와집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宮殿 가까이 세워지는 建物의 大部分은 官衙建築이나 또는 高官 貴族의 邸宅이었을 것이고 또 좀 떨어져서는 寺刹伽藍들이 들어 있었을 것임은 지금의 慶州의 遺蹟을 보아 充分히 알 수 있다. 혹시 당시의 王都인 金城 內의 住宅은 거의 기와로 덮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新羅의 모든 民家 또는 金城 周邊의 모든 民家가 모두 기와집이었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歌吹連聲」할 수 있는 그런 「民」 즉 高句麗에 관한 文獻記錄의 「庶人」에 해당될 그런 「民」의 住居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들은 혹시 밥을 짓는데 솥을 使用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一般庶民의 住宅이나 生活의 樣相을 記錄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一般庶民들의 住宅은 초가가 많았고 밥을 짓는데는 장작을 使用했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와 꼭 같은 態度로 읽어야 할 記錄이 있다. 그것은 <新唐書> 東夷傳 新羅條에 新羅의 風俗을 描寫하여,

「…冬則作竈堂中 夏以食氷上…」

이란 記錄이다. 冬季에 堂中에 만드는 부뚜막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夏季에 飲食物을 얼음 위에 놓아 차게 하여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란 果然 어떤 地位의 사람들이었을 것일까.

이 風習은 도저히 一般庶民들의 生活風習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아마 여름에 얼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란 王族에 극히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 즉 貴族階級에 속하는 사람들이나 王을 가까이 모시는 臣下들 즉 特殊한 地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겨울에 堂中에 만드는 부뚜막은 最近에 慶州 雁鴨池에서 發見된 바 있는 「土製 풍노」라고 이름지은 土器와 같은 것일지 모르겠다.

以上の 考察을 통하여 新羅의 住宅에 대해서는 文獻에 남겨진 記錄의 대부분은 當時의 貴族 또는 特權階級에 속하는 사람들의 住宅에 關한 記錄이며 一般庶民 住宅에 대해서는 具體적으로 알 수 있는 資料가 없다. 다만 이들 記錄에서 그것을 推測할 수 밖에 없는 形便이다.

高句麗에 그 存在가 記錄에 의해서도 確認되었던 溫突 또는 溫突의 始源的 暖房施設은 前述한 바와 같이 百濟에서는 消極的인 根據이기는 하나 存在할 可能性이 있었으나 新羅에서는 果然 어땠을까. 역시 이에 대해서도 具體적으로 그 存在를 確認할 수 있는 資料는 없다. 다만, 從來 앞에서 말한 「炊飯以炭 不以薪」이나 「冬則作竈堂中」 등의 記錄을 根據로 하여 新羅에는 溫突이 없었다고 생각하여 왔다.⁽¹⁹⁾ 그러나 위에서 말 한 바와 같이 이러한 記錄은 當時의 特殊한 階級에 속하는 사람들의 生活 모습을 描寫한 記錄이기 때문에 이 記錄으로는 新羅에 溫突이나 혹은 그 始源的 施設이 없었다고 斷定할 根據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筆者는 생각한다. 물론 당시의 貴族이나 特殊한 階級の 사람들 住宅에는 溫突이 없었다고 할 根據는 되나 결코 그것이 一般庶民들의 住宅에도 없었다는 根據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反面에 〈三國遺事〉 卷3 塔像 第4에는,

「…朴朴師 占北嶺獅子窟 作板屋 八尺房而居 故言板房…」

이란 記錄이 있다. 이 記錄은 新羅에도 溫突이나 그 始源的 施設이 存在하였을 可能性이 있다는 것을 示唆하는 것이다. 그것은 「板房」이라고 特別히 불리게 된 방은 그 방의 바닥이 널판자로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判斷되며 그것이 매우 珍貴한 것이기 때문에 「板房」이라고 불리게 된 것일 것이다. 널판자가 깔린 방이 珍貴한 것이었다면 그 當時의 방 바닥은 어떤 것이었을까. 磚을 깔거나 흙바닥이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一般庶民들 집의 방 바닥은 당연히 흙바닥이었다고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방 바닥이 흙바닥이라면 相當한 추위를 갖는 韓半島東南部地域의 冬季에는 어떤 暖房施設이 있어야 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高句麗에는 分明히 있었던 溫突 또는 그의 始源的인 施設이 新羅에서도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筆者의 意見이다.⁽²⁰⁾

濟州島의 住宅에 대해서는 〈海東釋史〉 第29卷 民居條에 〈新唐書〉부터의 引用이라고 밝히면서,

(19) 村田治郎「朝鮮の溫突の始まりについて」朝鮮と建築 第8輯 2號

(20) 拙稿「溫突についての二三の考察」日本建築學會論文報告集 大會號 第2部 第60號 1968年 日本建築學會.

「僮羅俗朴陋 夏居草屋冬窟室」

이란 記錄이 있다. 前述한 辰愼氏住居의 경우와 季節에 따라 住居를 바꾸는 風習이 있었다고 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草屋이 어떤 것인지 疑問이나 窟室은 堅穴住居를 말하는 것일 것이다.

IV

高麗時代의 住宅에 관한 文獻資料로서는 中國의 文獻인 <宋史>와 <高麗圖經>이 있고 <高麗圖經>에서는 比較的 많은 資料를 찾을 수 있다. 우리 나라 文獻으로는 <高麗史>를 비롯해서 각종 文獻에서 우리 나라에 관한 記錄을 拔萃 收錄한 <海東釋史>와 <東國文獻備考> 등이 있고, 또 高麗의 舊都와 遺蹟에 대해서 記錄한 <高麗古都徵>이 있으며 그밖에 당시의 人士들에 의해 남겨진 文集 등에서 住宅關係 記錄을 찾을 수 있다.

<高麗圖經> 卷3 民居條에는,

「王城雖大 礪隴山麓 地不平曠 故其民 居形勢高下 如蜂房蟻穴 誅茅爲蓋 僅庇風雨 其大不過兩椽比 富家稍置瓦屋 然十纔一二耳 舊傳惟娼優所居 揭長竿 以別良家 今聞不然 蓋其俗淫 祠鬼神 亦厭勝祈禱之具耳」

라고 있고 이에 앞서 「國城」條에는

「…民居十數家其一聚落 井邑市街無足取者…」

라고 되었다. 이 記錄들은 당시의 文化的 先進國이었고 指導的인 位置에 있던 宋나라 官史인 徐兢의 優越感에 넘친 눈으로 본 開城의 樣相에 대한 描寫이기 때문에 多少 그 貧弱한 모습을 誇大하게 表現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近世의 서울 近郊의 貧民街의 樣相이나 지금의 地方 農家 등의 모습으로 보아 「如蜂房蟻穴」이나 「富家稍置瓦屋 然十纔一二耳」 등의 表現은 그다지 큰 差가 있는 表現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娼優所居揭長竿 以別良家」라는 記錄은 좀 疑心스럽다. 徐兢도 「舊傳」이라 하고 「今聞不然」이라 하여 “벌써 그 風俗을 보지 못했다”는 말을 하고 있으나 잘 납득되지 않은 말이다. 우리 나라에는 先史時代 즉 적어도 青銅器時代부터 原始宗教가 있었고 高句麗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立大屋祭鬼神云云」하며 前揭한 <高麗圖經>에서도 그러한 말이 있고 近世까지도 많은 雜神을 믿으며 祭지내는 風習이 많았고, 지금도 간혹 地方에 가면 部落 앞에 대나무 꼭대기에 鳥形을 단 춧대를 세우는 곳도 있고 또 巫堂집에는 대나무를 집 入口에 세우는 風習이 있다. 「娼優」란 말 속에 巫堂의 뜻이 포함되는 것인지 또는 古代에서 中世에는 巫舞나 巫歌 등이 좀 더 大衆的인 노리와 直接的인 關係가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 알지 못 하나 筆者의 見解로는 巫堂집의 標識이었던 「長竿」을 徐兢이 錯覺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高麗圖經>의 卷28 供張 1의 臥榻條에는,

「臥榻之前 更施矮榻 三面立欄楯 各施錦綺茵褥 復加大席 莞簟之安 殊不覺夷風……若民庶 則多爲土榻 穴地爲火炕臥之 蓋其國 冬月極寒 復少續絮之屬爾」

라고 있어, 當時의 住宅의 寢室의 樣相을 자세히 說明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寢臺 앞에 작은 평상을 놓고 3 面に 가리개를 세워 비단이나 毛織의 이불과 요를 使用하여 다시 大席을 加하고 앉는 자리의 편안함은 별로 夷風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 것을 보면 당시의 貴紳들의 生活은 中國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본 받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庶民들 사이에는 溫突이 많이 普及되어 거기서 起居하며 요나 이불은 적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事實은 近世의 農村의 貧民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일이다.

〈宋史〉에는 극히 간단히 開城의 住宅 樣相을 卷487, 列傳 第246 外國의 3條에 記錄하고 있으나 이것은 〈高麗圖經〉으로부터의 引用에 의한 것 같고 그 內容으로 보아 여기서 言及할 必要가 없는 정도의 것이다.

住宅에 관한 우리 나라 文獻資料 가운데 〈高麗史〉에는 그 卷85 志第39 刑法2 禁令條에,

「成宗元年六月 正匡崔承老上書曰 新羅之時 全卿百僚庶人 衣服鞋襪 各有品色……禮云夫子之堂九尺 諸侯堂七尺 自有定制 近來人無尊卑 苟有財力 則皆以營室爲先 由是諸州郡縣及亭驛津渡豪右 競構大屋 踰越制度 非但盡一家力實勞 百姓其弊甚多 伏望命禮官配定尊卑家舍制度 令中外遵守 其已營造踰制者 亦令毀撤以戒……」

라는 記錄이 있다. 이것은 高麗 成宗朝의 正二品下의 벼슬인 正匡이었던 崔承老가 上奏文을 올려 “新羅 때는 公卿百僚에서 庶人에 이르기까지 衣服이나 신발에 이르기까지 각각 品色이 있었다. ……禮書에 말하기를 天子의 堂은 9尺이고 諸侯의 堂은 7尺이라는 制度가 定해져 있었는데 근래에는 사람들이 尊卑가 없이 財力이 있기에 서로 居室을 營造함을 優先하고 있다. 이에 따라 諸州나 郡縣 또는 各 亭이나 驛・津・波 등의 勢力이 강한 사람들은 다투어 大屋을 만들며 그 制度를 넘고 있다. 이 일온 비단 한 집의 財力을 없앨 뿐 아니라 百姓들에 稅捐을 많이 끼치게 되니 禮官에 命하여 尊卑에 따른 家舍制定을 작성하여 中外에 이를 遵守도록 시켜 이에 따라 이미 營造된 踰制者는 역시 이를 破壞 撤去시켜 조심하도록 하여 달라” 라고 했던 記錄이다. 이에 따라 어떻게 處理되었는지 또 어떤 家舍制度가 制定되었는지 그 記錄을 찾지 못하나 當時의 裕福者들이 서로 廣大하고 豪華로운 집을 만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崔承老의 上奏文의 「天子堂九尺 諸侯堂七尺」이란 것은 이것이 방의 크기를 나타낸 것인지 또는 기둥의 높이를 말한 것인지 잘 알 수 없고 이 말로 방이나 建物의 規模가 定해지는 것인지 理解하기 어렵다. 다만 前述한 바와 같이 個個의 建物을 한 目的 또는 機能에 따라 세웠다면 「九尺」이나 「七尺」이란 것은 기둥 높이로 判斷할 수 있고 따라서 그 建物의 크기도 어느 정도 抽出할 수 있다. 어떻든 高麗에서도 階級에 따라 어떤 種類의 家舍規制가 있었음은 틀림 없는 것 같고 家舍가 奢侈하다는 記錄들도 자주 볼 수 있다.

〈高麗古都徵〉에는 高麗時代의 風俗을 描寫하여 卷之 風俗條에,

「忠烈王三年秋七月 觀候署言 謹按道說密記 稀山爲高樓 多山爲平屋 多山爲陽 稀山爲陰 高樓爲陽 平屋爲陰 吾國多山 若高屋必招衰損 故太祖以來 非惟闕內不高其屋 至於民家悉皆禁之 令聞造成都監 用上國規模 欲作層樓高屋 是則不述道說之言 不遵太祖之制也……」

라 하여 高樓 高屋을 建立하는 것을 막았고 忠烈王은 이 進言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은 高麗太祖가 깊이 信任한 僧道說의 陰陽說에 의해서 행하여진 風習으로 山岳이 많은 韓半島에서는 高層建物을 세우는 것은 陰陽의 調和가 맞지 않아 地氣가 衰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說에 影響을 받아서 그러했던지 우리 나라에서는 佛寺建築 특히 塔婆와 宮殿의 樓門이나 城門 以外에는 거의 重層 以上の 高層建物은 세워지지 않았고 특히 住宅建築에 있어서는 거의 모두가 平屋이었다.

이러한 이야기와 相通하는 이야기가 李奎報의 〈東國李相國集〉 卷20의 「壤土室說」에도 볼 수 있다.

「十月初吉 李子自外還 兒子輩鑿土作廬其形如墳 李子佯愚曰 何故作墳於家 兒子輩曰 此不是墳乃土室也 曰奚爲是耶 曰冬月宜藏花草瓜蔬 又宜婦女紡績者 雖盛寒之月 溫然若春氣 手不凍裂 是可快也 李子益怒曰 夏熱冬寒 四時之常數也 苟反是則爲性異 古聖人所制 寒而裘暑而褐 其備亦足矣 又更營土室 反寒爲煖 是謂逆天令也 人非蛇蟻 冬伏窟穴 不祥莫大焉 紡績自有時 何必於冬歟 又春榮冬悴 草木之常性 苟反是亦乖物也 養乖物爲不時之翫 是奪天權也 此皆非予之志 汝不速壞 吾答汝不赦也 兒子等亟懼亟撤之 以其杖備炊薪 然後心方安也」

라는 것이다. 여기서 「鑿土作廬 其形如墳」이라고 한 것은 分明히 堅穴住居式으로 만든 움집을 말하는 것이며, 그 모습이 무덤 같다는 것으로 窺으로 이은 것이다. 李子는 아이들이 만든 움집을 모른채 하면서 집안에 왜 무덤을 만들었느냐고 묻고 그것이 무덤이 아니고 겨울에 채소를 貯藏하거나 그 속에서 베를 짜거나 하면 춥지 않고 손도 안 얼어 아주 快適한 움집이라, 하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은 四時의 常數로서 움집을 만들어 추운에 反하여 덥게 하는 것은 天令에 反逆하는 것이라 하고 봄에 繁榮하고 겨울에 파리해짐은 草木의 常性인데 이를 어겨 비둘 어지게 질러 때에 맞지 않은 것을 보고 좋아하는 것은 天權을 빼앗는 것이라 하여 이것을 모두 破壞 撤去시키고 만다. 이렇게 冬季에 貯藏庫로서 혹은 室內作業場으로서 好適하다고 만든 兒子들의 合理的이고 進取的인 생각을 自然의 攝理에 어긋난다 하여 禁하는 思想 그리고 文集의 著者인 李奎報도 그렇게 한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여 이 글을 남긴 것 같은 印象을 풍기고 있는 그 思想이 古來로 우리 나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思想이다. 이러한 思想은 극히 最近까지 우리 나라 여러 分野에서 確認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中國이나 우리 나라 文獻資料로서는 高麗時代의 住宅의 樣相을 具體적으로 알 수는 없었다. 그러나 文獻에 남겨진 記錄에 의해 推定한다면 庶民住宅은 이미 堅穴住居

는 一般的으로는 행하여 지지 않았음은 물론이며 竊으로 지붕을 이은 地上住居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官吏나 地方의 富裕한 사람들의 住宅에는 기와로 지붕을 이은 개와집도 얼마간은 있었을 것이다. 또 높은 地位나 權力을 갖는 사람들의 주택은 相當히 豪華로운 裝飾이나 奢侈스러운 큰 規模를 갖는 것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집도 古代에서 볼 수 있었던 기둥 위에 斗栱을 올리고 懸魚를 裝飾하고 丹青하는 등의 일은 그다지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李朝時代의 貴族 또는 上流住宅과 큰 차가 없는 그런 住宅이었으리라 믿어진다.

高句麗에서는 「甕民」들 사이에 행하여졌고 百濟에서는 있었을 可能性이 많고 新羅에서도 있었다고 斷定할 수 없는 우리 나라 特有의 暖房施設인 溫突이 高麗時代에서는 널리 普及되어 거의 一般化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高麗圖經〉의,

「若民庶 則多爲土榻 穴地爲火炕臥人……」

를 보아 庶民들 사이에 一般化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이 時代 人士에 의해 만들어진 文集 등의 內容에서도 그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李奎報의 〈東國李相國集 後集〉 卷7의 暖堦條에,

「冬月臥冰堦 寒威來刮骨 幸今燒拙揖 一束炭已發 氤氲氣如春……」

라고 있고 또 李穡의 〈牧隱集〉 卷二에,

「安州江 宿義州站東上房 夜半從火堦欠處 燒塗壁紙風生室明……」

라고 있는 「暖堦」「冰堦」 또는 「火堦」이란 말에서 알 수 있다. 이들 記錄은 주로 그 文集의 著者들의 紀行文이나 旅行中에 있었던 事件에 대해서 쓴 글인 듯 하나 이들이 「暖堦」이나 「冰堦」 또는 「火堦」이라는 말에 대해서 또는 그 「堦」 즉 溫突施設에 대해서 아무런 奇異한 施設 또는 珍貴한 裝置라는 느낌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 듯 한 態度로 글을 쓰고 있고 그것을 극히 一般的인 用語로 使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事實로 미루어 벌써 이 時代에는 溫突이 充分히 一般에게 普及된 暖房施設로서 이에 대해서 아무런 好奇心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역시 〈東國李相國集〉 卷11의 「擁爐有感」이나, 〈東國李相國集後〉 卷1의 走筆謝大王寺文師送炭의 글에,

「……邇來方墮寒氷獄 吒吒波波忍可堪 忽荷德人恩煦物 滿家和暖以春酣 年表脫炭色如磐 喜及寒兒與冬妻……」

란 글이나, 같은 〈後集〉의 卷7의 擁爐란 글에,

「……擁爐自添炭 有酒手自煖……」

이나, 苦寒이란 글 속의,

「……我屋冷如剝 禦寒未備……」

또는 卷8의 塗窓 속의,

「今日塗窓罅 能防烈風 神哉一幅紙 大有禦寒功」

등의 글을 보면 이들 人士의 自宅에서의 生活에서는 溫突施設을 갖추어 있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記錄과 〈高麗圖經〉의 上揭記錄 등을 생각하면 高麗時代에는 當時의 上流階級이나 소위 兩班에 該當되는 사람들 家에서는 溫突을 使用하지 않는 것이 常例였던 듯 하다. 그리고 그들의 生活은 「殊不覺夷風」의인 中國을 模倣한 生活이었던 것 같다.

이와 같은 狀況은 다음 李朝時代에도 계속된 것 같으며 李朝 憲宗朝의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 卷10의 溫突坑辨證說條에,

「……嘗閱座說 則曾諸耆 舊退計百年前公卿貴戚宅中 煖突不過一二間 爲老病所處 餘皆板架上寢處 其廳中圍 以屏帳簾 以重茵……」

라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結論으로 말하여 우리 나라 溫突은 그 始源이 高句麗 또는 그 이전에 시작되어 始終 下層階級 또는 庶民들 사이에서 普及되었을 것이며 高麗時代에는 거의 全國에 普及된 극히 一般化된 暖房施設이었으나 高麗時代에도 上流階級の 사람들 住宅에서는 採用되지 않았고 李朝에 들어와서도 그러한 氣風이 남아 있었으나 暖房施設의 效果와 便宜에 따라 점차 上流 兩班階級에게도 普及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

結 言

實際 住宅 또는 住居가 남아 있지 않는 先史時代부터 高麗時代에 이르기까지 各 時代의 住居 또는 住宅의 樣相을 짐작할 수 있는 文獻記錄을 찾아 記錄 以外的 遺蹟이나 住宅에 관한 高句麗 古墳壁畫를 參考하여 考察했다. 李朝時代에 들어서는 좀 더 많은 住宅에 관한 記錄도 남아 있고 또 住宅建物 自體도 적지 않게 남아 있다. 李朝時代의 住宅은 社會的 階級 또는 階層에 따라 上流住宅과 中流住宅 그리고 庶民住宅으로 分類할 수 있고 이 各級 住宅에 따라 그 規模나 構造 施設 등에 差異를 찾을 수 있다. 또 그 住宅이 存在하는 地域에 따라 서울形, 北部形, 西部形, 中部形 및 南部形 그리고 濟州島形으로 住宅平面構成에 따라 分類할 수 있다. 이러한 李朝時代 住宅을 參考하여 이를 소급 考察함으로써 高麗時代의 住宅相을 좀 더 具體的으로 推測할 수 있을 것이고 新羅나 百濟의 住宅은 역시 高句麗 古墳壁畫의 그림과 얼마간 남아 있는 新羅의 家形土器 등을 참고하여 역시 좀 더 具體的인 住宅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庶民들의 住居에 있어서는 李朝時代의 그것을 보고 또 新羅의 家形土器를 보면 住宅의 構成上 三國時代 以後의 地上住居와 李朝時代의 住居와는 構造 技法上에 얼마간의 變化 發展은 있으나 基本的으로는 별 差異 없었던 것이었다고 생각된다.